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7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0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서삼석 · 김 윤
이성운 · 서미화 · 박용갑
문금주 · 박 정 · 김승원
문대림 · 최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·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,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에 따라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5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(의안번호 제1672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5호 중 “범죄 및 「내수면어업법」에 규정된 범죄”를 “범죄,
「내수면어업법」에 규정된 범죄,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
에 규정된 범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.	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 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4. (생 략)	1. ~ 14. (현행과 같음)
15.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「수산업법」에 규정된 범죄, 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규정된 범죄, 「어업자원보호법」에 규정된 범죄, 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 규정된 범죄, 「어선법」에 규정된 <u>범죄 및 「내수면어업법」에 규정된 범죄</u>	15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범죄, 「내수면어업법」에 규정된 범죄,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에 규정된 범죄</u>
16. ~ 50. (생 략)	16. ~ 50. (현행과 같음)